# 관세청고시 제2015- 호(2015. 7.)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2015. 7. .



관 세 청

KOREA CUSTOMS SERVICE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1
제2장 운영인의 자격 및 심사	
제3조(운영인의 자격)	2
제4조(시설요건)	3
제5조(운영인의 의무)	3
제6조(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5
제3장 특허의 공고 및 심사절차 등	
제7조(특허신청의 공고)	
제8조(특허신청 절차 등)	
제9조(특허심사위원회 심의 등)	
제10조(특허여부 결정 등)	
제11조(특허기간)	9
제12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등)	9
제13조(특허의 갱신)1	10
제4장 판매물품 반출입 절차 등	
제14조(판매 대상물품)1	
제1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1	
제16조(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1	
제17조(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1	
제18조(통합물류창고 등 반출입 물품의 관리)1	13
제19조(판매장 진열 및 판매)1	
제20조(외교관면세점의 판매절차)1	15
제21조(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1	15

제22조(판매물품의 보세운송)16
제23조(판매물품의 인도)17
제24조(보세공장 물품 등의 반출입 절차)20
제25조(보세판매장간 물품의 양수도시 업무처리절차 등)21
제26조(대금영수)21
제27조(미인도 물품의 처리)21
제28조(반품, 분실물품 등의 처리)22
제29조(특허상실에 따른 재고물품의 처리) 23
제30조(미판매 재고물품의 처리)23
제3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23
제5장 업무감독 및 협의단체
제32조(세관장의 업무감독)24
제33조(담당공무원의 임무)25
제34조(보세사의 임무)25
제35조(세관장의 보고사항)26
제36조(보세판매장 협의단체)26
제6장 보 칙
제37조(행정제재) ····································
제38조(청문)
제39조(서류의 보관)29
제40조(준용규정)29
제41조(재검토기한)29
부칙<고시 제88-547호~제2015-06호> ····· 29~35
부칙<고시 제2015- 호 <i>, '</i> 15.7. > ··································
별표 1~5 36~41
별지 1~24 ····································

# 별표 및 별지 서식 목록

일련번호	제 목	크기(용지)	비고
별표1	외교관면세점에서 판매할 물품(제한물품중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된 물품 포함)		목록표
별표2	반입검사신청확인 필증(담당자 확인)	45×24mm	고무인
별표3	반입검사신청P/L확인 필증	70×25mm	고무인
별표4	전자서류 반입검사신청증명	45×25mm	고무인
별표5	외교관면세물품 통관확인필증	60×40mm	고무인
제1호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신청서	210×297mm	'85.1월 제정
제2호	보세판매장 특허장	210×297mm	'85.1월 제정
제3호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기간 갱신 신청서	210×297mm	'15.7월 신설
제4호	보세판매장 승계 신고서	210×297mm	'85.1월 제정
제5호	보세판매장물품반입신고서	210×297mm	'85.1월 제정
제6호	구매자 관리대장	210×297mm	'90.6월 신설
제7호	업무사항보고서(구매자별 인원 및 판매현황)	210×297mm	'86.12월 신설
제7-1호	업무사항보고서(구매자 및 물품별 판매현황)	210×297mm	'15.1월 신설
제7-2호	업무사항보고서(보세판매장별 면적현황)	210×297mm	'15.1월 신설
제7-3호	업무사항보고서(국적별 판매현황)	210×297mm	'15.1월 신설
제7-4호	업무사항보고서(물품별 품목별 판매현황)	210×297mm	'15.1월 신설
제7-5호	업무사항보고서(구매자별 품목별 판매현황)	210×297mm	'15.1월 신설
제7-6호	보세판매장 근무직원 현황 및 변경사항	210×297mm	'15.1월 신설
제8호	판매대장	190×268mm	'86.12월 신설
제9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물품판매신고서	210×297mm	'04.10월 신설
제10호	면세통관신청서(외교관면세점)	210×297mm	'85.1월 제정
제11호	Goods Purchased	210×297mm	'85.1월 제정
제12호	면세통관의뢰서(외교관면세점)	210×297mm	'85.1월 제정
제12호의1	Details of Purchase at Bonded Store	210×297mm	'85.1월 제정
제14호	면세통관의뢰서 관리대장	190×268mm	'86.12월 신설
제16호(전면)	교환권	190×140mm	'90.6월 신설
제16호(이면)	현품인수도사항	190×140mm	'90.6월 신설
제17호 갑지	출국내국인 구매 국산품 국외반출 확인서	297×210mm	'90.6월 신설
제17호 을지	출국내국인 구매 국산품 국외반출 확인서	297×210mm	'90.6월 신설
제18호	국제우편물(항공·해상화물)송부의뢰서	210×297mm	'09.12월 신설
제19호 갑지	반송 및 간이 보세운송신고서	210×297mm	'86.12월 신설
제19호 을지	반송 및 간이 보세운송신고서	210×297mm	'86.12월 신설
제20호	보세판매장의 수용능력 증감 등 공사신청(승인)서	210×297mm	
제21호	판매물품 반출승인(신청)서	210×297mm	'86.12월 신설
제22호	보세판매장간 양도·양수물품 보세운송신고서	210×297mm	'86.12월 신설
제23호	보세판매장판매물품 인도자지정신청(허가)서	210×297mm	'00.12월 신설
제24호	보세판매장 물류창고 운영 허가(신청)서	210×297mm	'05.12월 신설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
관세청고시 제83-393호 ('83. 1.15)
                              관세청고시
                                         제97-43호 ('97. 11. 29)
관세청고시 제85-410호 ('85. 8. 23)
                              관세청고시
                                         제98- 14호 ('98. 4.13)
관세청고시 제86-426호 ('86. 2.10)
                              관세청고시 제98-49호 ('98. 9.30)
관세청고시 제86-438호 ('86. 6. 9)
                              관세청고시 제98-78호 ('98. 12. 11)
                              관세청고시 제99-28호 ('99.07.06)
관세청고시 제86-454호 ('87. 1. 1)
관세청고시 제88-508호 ('88. 1.20)
                              관세청고시 제99-53호 ('99. 12. 24)
관세청고시 제88-512호 ('88. 2. 8)
                              관세청고시
                                       제2000- 43호 ('00. 12. 22)
관세청고시 제88-527호 ('88. 6.27)
                              관세청고시
                                       제2001- 11호 ('01. 2. 16)
관세청고시 제88-547호 ('88. 11. 28)
                              관세청고시
                                       제2001- 31호 ('01. 6. 20)
관세청고시 제89-566호 ('89. 3. 9)
                              관세청고시
                                       제2004- 44호 ('04. 10. 27)
관세청고시 제89-597호 ('89. 10. 12)
                                       제2005- 42호 ('05. 12. 27)
                              관세청고시
관세청고시 제89-599호 ('89. 10. 25)
                              관세청고시
                                       제2006-25호 ('06. 6.28)
관세청고시 제89-607호 ('89. 12. 15)
                              관세청고시
                                       제2008- 5호 ('08. 1. 15)
관세청고시 제90-640호 ('90. 7.11)
                              관세청고시
                                       제2008-26호 ('08. 8.21)
관세청고시 제90-657호 ('90. 12. 28)
                              관세청고시
                                       제2009-47호 ('09. 8. 20)
관세청고시 제91-688호 ('91. 6.21)
                                       제2009-120호 ('09, 12, 30)
                              관세청고시
관세청고시 제92-732호 ('92. 5. 19)
                              관세청고시
                                       제2010- 29호 ('10. 2. 10)
관세청고시 제92-762호 ('92. 12. 24)
                              관세청고시
                                       제2010-106호 ('10. 7. 16)
관세청고시 제93-785호 ('93. 4.17)
                              관세청고시
                                       제2011- 14호 ('11. 3.30)
관세청고시 제94-852호 ('94. 1.11)
                              관세청고시
                                       제2011- 47호 ('11. 11. 30)
관세청고시 제94-878호 ('94. 5. 23)
                              관세청고시
                                       제2012- 36호 ('12. 10. 14)
관세청고시 제95-917호 ('95. 2.28)
                              관세청고시
                                       제2014- 35호 ('14. 3. 12)
관세청고시 제96-34호 ('96. 6.27)
                              관세청고시
                                       제2015- 06호 ('15. 1. 27)
                                       제2015- 호 ('15. 7. )
관세청고시 제97-42호 ('97.11.15)
                              관세청고시
```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 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외교관면세점"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04.10.27 개정)
- 2. "출국장면세점"이란 운영인이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 3. "시내면세점"이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04.10.27 개정, '15.7. 개정)

- 4. "국산품"이란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된 물품과 주문자생산방식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국내 상표의 물품을 말한다.('15.7. 신설)
- 5. "매장"이란 판매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 6. "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04.10.27, '05.12.27 개정, '11.11.30 개정)
  - 가. 출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 나. 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이하 "외국무역선등"이라 한다)의 선내
  - 다. 통관우체국내 세관통관장소
  - 라. 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
- 7. "출국장"이란 공·항만 보세구역내에서 출국자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 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를 말한다. ('04.10.27 개정)
- 8. "운영인"이란 법 제174조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설치· 운영 특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9. "출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 10.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한민 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여권(PR)을 소지한 자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 여권(PR)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01.7.1 신설, '08.1.15 개정)
- 11. "보세판매장 협의단체"란 운영인의 공정한 상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자율적으로 확립하고 보세판매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11.11.30 전문신설)
- 12. "통합물류창고"란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장이 회원사의 원활한 보세화물관리와 물류지원을 위하여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보관창고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곳을 말한다.('12.10.14 신설)

# 제2장 운영인의 자격 및 심사

제3조(운영인의 자격) ①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자본금 10억원이상 의 법인이어야 하며, 같은 법인이 다른 장소에 보세판매장을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특허장소별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한다.('99.7.6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
  - 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그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제4조(시설요건)** ① 보세판매장의 매장과 보관창고 등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99.12.24, '00.12.22 일부개정, '04.10.27 개정)
  - 1. 외교관면세점

서울특별시내에 한하여 매장 및 보관창고를 각각 별도로 설치하되 세관장이 보세화물 관리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면적

2. 출국장면세점

가. 매장

출국장의 사정에 따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전협의된 장소의 범위내에서 세 관장이 인정하는 면적('08.1.15 개정)

나. 보관창고

매장과 동일 출국장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일 공·항만의 보안구역 중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08.1.15 신설).

- 3. 시내면세점
- 가. 서울과 부산지역 매장 496㎡ 이상 보관창고 165㎡ 이상
- 나. 기타 지역 매장 331㎡이상 보관창고면적 66㎡ 이상
- 4. <삭 제>
- ② 보세판매장을 설치·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보세화물의 화재, 도난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시설 또는 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보석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보세판매장은 세관감정용 다이아몬드 테스타기 및 보석 현미경을 판매장과 인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인의 의무) 운영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에 매장면적의 40%이상 또는 825㎡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 매장면적의 20%이상 또는 330㎡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01.7.1, '04.10.27 일부개정, '12.10.14 개정)

- ②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여 내수판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운영인은 제14조에 따른 판매물품을 진열·판매하는 때에는 상표단위별 진열 장소의 면적이 매장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보세판매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0.12.22 개정, '04.10.27 전문개정)
- ④ 운영인이 외화로 표시된 물품을 표시된 외화이외의 통화로 판매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날의 전일(최종 고시한 날을 말한다)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인은 당일 적용하는 환율을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하여 정문입구 또는 구매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98.12.11 단서신설, '00.12.22, '04.10.27 개정)
- ⑤ 운영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면세점에서 발행하는 홍보팜플렛, 인터넷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01.7.1 신설)
- 1. 출국내국인 구매한도액과 면세한도액의 혼동방지
- 2.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의 원칙적인 국내반입 제한
- 3. 면세물품의 교환·환불절차 및 유의사항
- 4. 그 밖에 해외통관정보 등 관세청장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 ⑥ 제5항의 홍보게시판은 면세점 정문입구, 면세점 안내데스크, 면세점 계산대, 고객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이나 매출실적이 좋은 품목의 매장 앞, 그 밖에 구매자들의 시야에 가장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 갯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매장면적에 따라 차등 설치하되 매장당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01.7.1 신설)
  - 1. 매장면적 2,000 m² 초과 : 5개 이상
  - 2. 매장면적 1,000 m² 초과~2,000 m² 이하 : 4개 이상
  - 3. 매장면적 100㎡ 초과~1,000㎡ 이하 : 3개 이상
  - 4. 매장면적 100 m² 이하 : 1개
- ⑦ 운영인은 상거래상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판매물품에 대하여 판매가격 표시제를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대고객에 대한 할인판매와 재고상품 등의 처분을 위한 할인판매는 동등한 고객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지침을 작성하여 적용하거나 할인품목과 할인율을 매장에 게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06.6.28 개정, '11.11.30 개정)
- ⑧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반출입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재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월의 보세판매장의 업무사항(별지 제7호 및 제7-1호에서 제7-5호 서식)을 다음 달 7일까지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04.10.27

개정, '08.1.15 개정)

- ⑨ 운영인은 다음 달 7일까지 월별 해당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판매물품의 판촉·물류·사무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판촉사원 등"이라한다)의 현황 및 변경사항(별지 제7-6호 서식)에 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촉사원 등은 운영인의 사용인으로 본다.('01.7.1 신설, '04.10.27 개정)
- ①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판촉사원 등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하여 협의단체장이 주관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단체장이 교육 수요를 감안하여 수립한 교육계획을 관세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경우 그 계획 범위내에서 운영인은 소속직원과 판촉사원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11.11.30 전문신설)
- ① 운영인은 「관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1조에 따라 수용능력증감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①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 특허에 대한 공정한 심사 및 보세판매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 또는 각 본부세관(직할세관 포함)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이하 "특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 부위원장은 통관지원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장으로 하며,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제2항에 따른다.
  - ③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은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하며, 관세청장이 매 회의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부터 15인까지를 선임하고,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는 본부세관장이 7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한다.
    - 1. 관세청 및 관련부처의 서기관급 이상 공무원
  - 2.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 ④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민간위원을 과반수 선임하여야 하며, 안 건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를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 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기본요건 충족여부
    - 2. 시내면세점 및 외교관면세점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 3. 그 밖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⑥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출국장면세점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⑦ 위원장이 특허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2일전까지 의사일정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 및 배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⑧ 특허심사위원회 회의는 선임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식에 따라 각 심사위원의 평 가 결과를 종합하여 의결한다.

### 제3장 특허의 공고 및 심사절차 등

- 제7조(특허신청의 공고) ① 관세청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면세점의 매출액 추이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 1.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
  - 2.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이상 증가하는 경우(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동향연차보고서로 확인하며, 전년도 실적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직전년도 자료로 확인함)
  - ② 관세청장은 기존 보세판매장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신청 공고를 하여야 하며, 특허기간 만료의 경우 특허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7개월 이전부터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나 장소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 1. 외교관면세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2. 올림픽·세계공인박람회 및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기간 중에 참가하는 임직원, 선수, 회원 및 관광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하여 회의장, 경기장 또는 선수촌 주변에 한시적으로 시내면세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출국장 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출국장 시설 중 일부를 보세판매장 시설로 임

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화물의 적정한 관리 및 공항만 서비스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세판매장 시설의 위치와 면적, 특허와 관련되는 임차인 수와 구역별 판매물품, 입찰 자격 등 입찰 공고 내용, 보세화물 관리상의 안전성 등에 관하여 관할 세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공·항만 출국장면세점을 관할하는 세관장은 시설관리권자의 입찰공고 절차이전에 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자와 사전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특허신청 공고문을 작성한 후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특허신청 공고를 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세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 1. 특허의 신청 기간과 장소 등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 2. 특허의 신청자격
- 3.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 4. 특허업체 수, 특허신청시 구비서류, 판매대상 고객, 판매방법 및 절차, 기타 유의사항 등
- 제8조(특허신청 절차 등) ①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7조제 5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특허신청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와 특허신청 공고문에서 요구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중 건물이 신축중이거나, 임대계약 체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임대차 가계약서 등 매장 부지의 확보를 위해 진행중인 서류로 대신하여 제출하고사전승인 통보를 받은 후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최종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이 고시에서 정한 제반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 감시업무를 담당할 세관공무원의 확보여부, 감시감독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특허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신청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등을 조회하여야 한다.
  - ③ 시내면세점 및 외교관면세점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고종료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출국장면세점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본부세관장에게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도록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고

종료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 ⑤ 본부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특허 신청자의 평가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⑥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특허심사위원회 심의 등) ① 관세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전승인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른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승인여부를 의결한다.
- ② 제1항 및 제8조제5항의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법 제176조의2제3항 및 시행령 제192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별도의 세부평가표를 마련하여 심의한다.
- 1. 시행령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 2.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 명령 등의 위반 여부
- 3. 재무건전성, 법규수행능력,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 여부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 여부, 전체 매출실적 중 외국인에 대한 판매비중(이용자 수, 매출액)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 5. 보세판매장 설치 예정지 인근에 관광특구 지정여부 및 호텔 등 숙박시설의 편의성 등 관광 인프라 및 교통접근성 등 주변 환경요소
-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서 열거한 사업 등을 통해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한 정도
-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도 평가요소 등을 고려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 제10조(특허여부 결정 등) ① 관세청장은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사전승인 의결을 받은 날 또는 출국장면세점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사전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 여부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즉시 특허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고, 사전승인 받은 특허신청자의 영업개시일 이전까지 특허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보세화물 관리 등에 이상이 없는지를 최종 확인하고 특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특허의 신청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 1.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국유재산사용허가증 사본 등 시설주와의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사본
  - 2.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필증(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 검결과보고서(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 또는 「소방시설공 사업법」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설 건축물만 해당한다)
  - 4. 매장 및 보관창고의 위치도
- ③ 세관장은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기간은 30일내로 한다. 다만,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부세관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연장 여부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하여 영업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자가 특허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
- 장 설치·운영 특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8근 무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제9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여부 를 결정하여 해당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특허기간) ①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해당 보세구역의 설치·운영특허 신청기간으로 한다. 다만,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거나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치·운영특허 신청기간을 임차기간, 한시적 기간 등으로 하되, 5년의 범위로 특허할 수 있다.
  - ② 특허이후의 변동에 의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관장은 이를 시정할 때까지 해당 보세판매장에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다.
- 제12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등) ① 보세판매장설치·운영특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11.11.30 전문 개정)

- 1. 운영인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04.10.27 개정)
- 2.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해산 또는 사망한 때
- 3. 특허기간이 만료한 때
- 4. 특허가 취소된 때('04.10.27 개정)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운영인, 그 상속인, 청산법인 또는 합병·분할· 분할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규 설립된 법인(이하 "승계법인"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1.11.30 개정)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법 제179조제3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판매장 승계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 법인이 사망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보세판매장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임원 현황
  -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국유재산사용허가증 사본 등 시설주와의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사본
  - 4. 그 밖에 법인명, 대표이사 또는 보세판매장 운영과 관련 있는 임원, 보세판매장의 시설 등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근무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특허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피승계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특허장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⑥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의 보세판매장 특허는 이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대한 특허로본다.
- 제13조(특허의 갱신) ① 시행령 제192조의6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받으려 자는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 갱신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에게 특허를 갱신받으려면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특허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특허기간이 끝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제8조제2항의 사항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갱신을 승인하고 특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장 판매물품 반출입 절차 등

제14조(판매 대상물품) ①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외국물품은 다음과 같다.

- 1. 외교관면세점
  - 별표 1에 게기한 물품
- 2.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 품을 판매할 수 있다.

-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금지 물품
- 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규제 대상물품('04.10.27 개정)
- 3. <삭 제>
- ② 출국장면세점은 국산 가전제품 중 여행자의 휴대반출이 곤란하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쿠폰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쿠폰으로 판매한 상품은 관할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 수리후 선적하여야 한다.('04.10.27 개정)
- 제1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① 외교관면세점에서는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한외교관 및 외국공관원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04.10.27 개정, '11.11.30 개정)
  - ②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국산품매장 포함)에서는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01.7.1 일부개정, '12.10.14 개정)
  - ③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를 물품총액 미화 3,000불 이하로 하며, 운영인은 출국하는 내국인의 구매한도 범위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여객선으로 여행하는 출국내국인에 대한 구매 및 판매한도 총액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통관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00.12.22, '05.12.27 개정)
  - ④ 운영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04.10.27 신설)

- 제16조(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①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판매용물품을 보관창고(통합물류창고 또는 지정장치장 포함)에 반입한 후매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00.12.22, '05.12.27 개정, '12.10.14 개정)
  - ② 운영인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보관창고에 반입하는 때에는 전자문서 방식에 의하여 반입신고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다만, 전자문서 방식에 의하여 반입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반입신고하여야 한다.('00.12.22, '04.10.27 개정)
  - ③ 운영인은 보관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7근무일 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기간내에 반입검사 신청할 수없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04.10.27 개정, '12.10.14 개정)
  - ④ 반입검사신청은 운영인 또는 운영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문서로 수입통 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입검사 신청서(수입신고서양식 사용)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내국물품, 제25조에 따른 양수물품, 제27조에 따른 미인도 물품과 제28조에 따른 반품및 교환물품(적하목록 제출물품 및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세운송 반입물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04.10.27, '06.6.28 개정, '11.11.30 개정)
    - 1. 반입신고서사본(물품반입시 전자문서에 의거 반입신고되었을 때에는 생략함)
    - 2. 매매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 3. 선하증권 사본
    - 4. 송품장
  - ⑤ 세관장은 반입검사신청한 물품 중 검사대상을 선별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04.10.27 개정)
    - 1. 품명, 규격, 수량
    - 2. 적용세번 및 신고가격
    - 3. 반입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현품과의 상이여부, 파손 등 하자발생 여부 및 그 사유
    - 4. 그 밖에 현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⑥ 세관장이 제5항에 따라 반입검사신청서를 심사·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사항을 통보한다.('04.10.27 개정)
    - 1. 반입검사신청서에 별표2의 반입검사신청확인 고무인을 날인하여 신청인에 게 교부
    - 2. 관세사가 반입검사신청서 확인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세관기재란에 별표3의

- 반입검사P/L신청확인필증 고무인과 별표4의 관세사인장을 날인한 후 교부 3. 제5항 단서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경우 전자문서로 확인사항 통보
- ⑦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서 제출시 업체의 성실도, 물품의 우범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별 수입C/S 검사비율 범위내에서 자체 검사비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08.1.15 신설)
- 제17조(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 ① 운영인이 내국물품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자 하는 때에는 보세판매장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대상내국물품의 반입신고는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운영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특성상 일일재고로 운영되는 식품류와 단체고객으로 인하여 일시에 재고가 소진된 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후 반입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은 사후반입신고 사유및 반입물품 내역을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9.7.6 개정, '04.10.27 개정)
  - ③ 세관장은 환급대상내국물품을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자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5장 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내국물품의 보세판매장 반입확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01.7.1신설, '04.10.27개정)
  - ④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내국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창고에 구분 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여야 한다.('04.10.27 신설)
    - 1. 환급대상내국물품 : 환급고시 제5장제3절에 따른 정정·취하 승인서. 다만, 같은 규정에 따라 정정·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 또는 반송의 절 차에 의한다.
    - 2. 제1호이외의 내국물품 : 판매물품반출승인서
  - ⑤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환급대상내국물품이 아닌 내국물품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물품 등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한다.('04.10.27 신설, '05.12.27 개정)
- 제18조(통합물류창고 등 반출입 물품의 관리) ①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의 장이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내 물류창고를 통합물류창고로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는 관세청장으로부터 허가(별지 제24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12.10.14 개정)

- ② 통합물류창고의 운영인은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된 전체 물품의 재고현황이 확인 가능하도록 반출입 관리하여야 하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 후의 물품은 각 보세판매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전산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자동화 보관시설을 갖추고 재고관리가 적정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통합하여 장치할 수 있다.('06.6.28 단서 신설)
- ③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한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과 지정보세구역 반입물품을 구분하여 재고 관리하여야 한다.('12.10.14 개정)
- ④ 운영인은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통합물류창고 및 지정보세구역에서 보세판매장으로 장치된 물품을 반출입할 수 있으며,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을 통합물류창고 또는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같은 물품으로 구매자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구매자가 출국하는 공·항만의 인도장으로 운송하여 인도하거나 국제우편 또는 탁송으로 송부할 수 있다.
- ⑤ 운영인은 통합물류창고를 활용하여 해외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한 물품을 재반입할 수 있다. 이 때 공급 및 재반입 절차는 제30조의 반송절차와 제16조 판매용 물품의 반입절차에 따른다. ("15.7. 전문신설)
- ⑥ 통합물류창고 또는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반출입 감독 및 재고조사 등의 업무는 동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관장한다. ('05.12.27 전문신설)
- 제19조(판매장 진열 및 판매) ①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 또는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이 판매단가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 기록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01.7.1 개정, '04.10.27 개정, '15.7. 개정)
  - ② 운영인은 다음의 대장을 판매장에 비치하고 판매사항을 판매대장에 기록유지 또는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 요구시 물품별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물품이 제17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1 항에 따른 물품인 때에는 구분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01.7.1, '06.6.28 개정)
    - 1. 외교관면세점
      - 가. 판매대장(별지 제8호 서식)
      - 나. 면세통관의뢰서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
    - 2.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 가. 제1호 가목의 대장
      - 나. 구매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 ③ 출국장면세점의 판매물품을 이동판매 방식에 의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동판매대의 설치장소, 설치기한 및 판매품목 등에 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제20조(외교관면세점의 판매절차) ① 운영인이 외교관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외교관 구매자가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한 면세통관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통관의뢰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그 승인 한도내에서 분할 판매할 수 있다.('04.10.27 개정)
  - ② 운영인은 물품판매시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면세통관신청서의 구매상품란에 상품명세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외교관 구매자의 확인을 받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통관신청서의 제출은 수입신고서로 본다. ('00.12.22 개정)
  - ③ 세관공무원은 면세통관신청서의 우측하단에 통관확인 필증(별표 5)을 날인한 후, 원본을 세관에 비치하고 사본 1부는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관필 확인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고 세관공무원은 이를 수입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11.11.30 개정)
  - ④ 운영인은 면세통관신청서의 내용을 면세통관의뢰서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⑤ 운영인은 주류와 담배에 대하여 면세통관의뢰서 잔량확인대장에 구매승인량과 판매량 및 잔량을 기재하여 분기별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 ①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있다.
  - ②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물품판매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 업신고증 사본
    - 2.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사본
    - 3.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서(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운영인과 통신판매업신고인이 같은 법인인 지 여부와 전자상거래 운영방법, 구매절차 및 결제방법이 적정한 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④ 운영인이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으로 기록하여야 한다.('06.6.28 개정)

- ⑤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를 휴지, 폐지 또는 재개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방법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르거나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 을 명하여야 하며, 운영인이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물품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04.10.27 전문신설)
- 제22조(판매물품의 보세운송) ①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제2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물품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현품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별지 제16호 서식, 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교환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하여 인도장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교환권번호를 통보한 후 인도하는 때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00.12.22, '04.10.27, '05.12.27 개정)② 운영인은 출국하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의 국산품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과 탑승권·전자티켓 등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 에서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외국물품과 구분·적재하여 운송한 후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다.('04.10.27 분리신설, '06.6.28 개정, '15.7. 개정)
    ③ 운영인은 법 제93조제9호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세관장이 외교관례상 의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원할 경우 판매장에서 현장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은 판매 즉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

하여 판매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01.7.1 신설, '08.1.15 개정)

인도하여야 하며, 출국하는 내국인이 구매한 물품 또는 외국인 구매자가 출국장

- ④ 운영인은 교환권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 후 수리를 받아 운영인 책임하에 인도장으로 보세운송하되, 탑승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예정 2시간 전에도착되도록 하고(인도장 관할 세관장이 보세판매장과 인도장의 거리, 교통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1시간 전)보세운송신고 건별로 운송할 물품을 세관장이 승인한 행당에 넣은 후 세관공무원이 시건과 봉인을 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거대부피로 행당에 넣기가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박스 포장하여 운송할 수 있다.('98.12.11 단서신설, '04.10.27개정)
- ⑤ 세관장은 보세운송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의한 운송물품 도착지세관장은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도착확인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

조제1항에 따라 인도자가 지정된 인도장의 보세운송 도착확인 및 수리 업무는 인도자에게 위탁한다.('08.8.21 신설, '11.11.30 개정)

- ⑥ 출국장면세점 운영인은 제21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다.('05.12.27 신설)
- 제23조(판매물품의 인도) ① 인도장에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판매물품을 구매자에 게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자(이하 "인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도장 관할세관장(이하 이조에서 "세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00.12.22. 신설)
  - 1. 인도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가. 제3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협의단체('05.12.27 개정)
  - 나.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
  -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인도자로 지정될 수 없다.
  - ② 인도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와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인도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5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도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자의 지정은 법 제172조에 따른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며, 인도자의 지정기간의 갱신 및 지정취소에 대하여는 각각제2호 및 제3호에 의한다.('00.12.22 신설, '05.12.27 후단개정)
    - 1.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 가. 인도장 운영계획서 1 부
      - 나. 채용 보세사 자격증 사본 각 1 부
      - 다. 그 밖에 세관장이 인도자 지정 및 인도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2. 지정기간 갱신 및 지정내용 변경('11.11.30 개정)
      - 가. 인도자 지정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지정신청시 구비한 서류 중 변경된 내역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지정기간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 나. 세관장은 지정기간 갱신신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심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간의 갱신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는 승인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인도자는 인도장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수선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유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 다.('11.11.30 전문 신설)
    - 3. 세관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 장은 면세물품 인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인도자 지정시까지 그 지정취소를 보류할 수 있다.

- 가. 제1항제2호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제37조에서 정한 경고처분을 1년 내에 3회 이상 받은 때
- 다. 그 밖의 인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관세행정 질 서를 문란하게 하여 세관장이 인도자 지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 는 때
- ③ 인도자는 인도장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의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인도업무를 보세사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01.7.1, '05.12.27 개정)
- ④ 인도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인도업무를 보조할 직원(이하 "인도보조자" 라 한다)을 둘 수 있다.('05.12.27 개정)
- ⑤ 인도자는 인도자와 인도보조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운영인이 운송한 물품을 인도자에게 인도할 장소를 지정하고 인도자와 인도보조자의 근무 및 물품인도에 관한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04.10.27 개정)
- ⑥ 인도자는 첫 항공편 출발예정시간 1시간 전부터 마지막 항공편이 출발하는 때까지 판매물품 인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업무를 수행할 보세사 및 인도보조자를 근무 배치하여야 한다.('05.12.27 개정)
- ⑦ 인도자는 인도장에 보세운송 물품이 도착된 때에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건과 봉인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시건을 개봉하고 보세운송 책임자와 인도자 가 판매물품 인수인계서(별지 제19호 서식의 반송 및 간이 보세운송 신고서를 판매 물품 인수인계서로 개서사용)를 작성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보세운송 도착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04.10.27, '05.12.27 개정)
- ⑧ 인도자는 제7항에 따라 물품의 인수를 완료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에게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재고관리시스템의 당해 보세운송에 대하여도착확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04.10.27, '06.6.28 개정)
- ⑨ 인도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 1. 구매자로부터 물품교환권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때에 구매자의 직접서명을 받고 구매시의 서명이나 인적사항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0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한 출국내국인의 경우에는 미화 3,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인도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구매대금의 환불이가능하도록 해당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00.12.22, '06.6.28개정)
  - 2. 인도자는 인도보조자에게 인도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나 교환권별 구매금액이 여행자휴대품면세범위 이상인 때에는 인도자가 물품교환권 여백에 인도

- 확인 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인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도자의 인도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05.12.27 단서신설, '11.11.30 개정)
- 3. 세관장은 품목 및 금액, 구매 선호도 또는 정보분석 등에 의하여 세관공무원 의 물품인도 입회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04.10.27, '05.12.27 개정)
- 4. 인도자는 당일 인도할 물품 중 제3호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시로 세관공무원에게 인도 예상시간을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05.12.27 개정)
- 5. 인도자는 교환권의 여권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출입국사실 등을 조회하여 본인여부 및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인도자는 인도 즉시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신고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05.12.27 신설)
- ⑩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인도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 1.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제9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도자의 인도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05.12.27 개정)
  - 2. 세관공무원이 제9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는 때에는 지정된 물품 전체에 대하여 확인하며, 물품의 품명, 규격, 구매자의 국적, 여권번호 및 성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05.12.27 개정)
- ① 인도자는 제9항제1호에 따라 회수된 교환권을 정리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 후 매 10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일자 단위로 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국산 품의 경우 교환권 또는 인도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한 국산품 국외반출확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국외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99.12.28, '04.10.27, '08.1.15 개정)
- ② 운영인 및 인도자는 판매한 물품이 미인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06.6.28 개정)
  - 1. 운영인은 물품교환권 이면에 인도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을 인쇄하여야 한다.
  - 2. 운영인은 미인도물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물품을 송부할 수 있도록 물품 판매시 교환권의 연락처 기재여부를 확인하거나 여행안내인 등의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06.6.28 개정)
  - 3. 운영인은 판매물품을 구매자의 출국일시에 인도될 수 있도록 인도장으로 신속히 운송하여야 한다.('06.6.28 개정)
  - 4. 인도자는 출국장의 잘 보이는 곳에 "인도장"의 표시를 하여 구매자들이 인도 장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06.6.28 개정)

- 5. 인도자는 공항만 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송 등을 통하여 판매물품 인도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06.6.28 개정)
- 6. 운영인 및 인도자는 각 판매사원과 인도장 근무직원에게 물품인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물품판매시 구매자에게 물품인수 절차에 대한 사전홍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06.6.28 개정)
- ③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송부를 의뢰하는 경우 운영인은 구매자가 작성한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 송부의뢰서(별지 제18호 서식) 3부 중 1부를 구매자에게 교부하고, 2부는 판매물품과 함께 구매자가지정한 기일내에 법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 또는 항공·해상화물 탁송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세관공무원 입회하에 통관우체국 담당공무원 또는 항공·해상화물 탁송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 송부의뢰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1. 판매장 순찰공무원은 판매물품 중 일부를 발췌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 후 시건과 세관봉인을 하여야 한다.('99.12.28 개정)
  - 2. 국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은 도착확인시 소포물 포장 및 세관직원 봉인상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국제우체국 소포창구(소 포창구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내에 있는 비통관우체국 우편창구)까지 호송하여 국제우편물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3. 공항만세관에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도착한 물품의 도착 확인 시 항공·해상화물송부의뢰서에 의거 포장 및 봉인상태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선·기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제13항에 따른 보세운송시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송부의뢰서 2부를 보세운송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1부는 보세운송 도착지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운영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 ⑤ 보세판매장의 물품은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내역이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되거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 반송신고한 것으로 보며, 인도장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하거나 국제우체국 또는 공항만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신고하여 수리된 때 반송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04.10.27 신설)
- 제24조(보세공장 물품 등의 반출입 절차) ①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세판매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보세판매장 관할세관 반입신고서와 판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세운송절차에 의거 운송하여야 한다.
  - ②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 중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된 물 품으로서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출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창고에 구분하여 장치하고 세관장에게 판매물

- 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99.12.28 일부개정, '04.10.27개정)
- ③ 운영인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을 보세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세공장 등으로의 보세운송신고는 반출내역신고로 갈음한다.('04.10.27 개정)
- 제25조(보세판매장간 물품의 양수도시 업무처리절차 등) ①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판매물품을 양수도 계약에 의해 타 보세판매장으로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보세운송 절차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99.12.28 일부개정)
  -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경우와 같은 법인내 보세판매장간 양수도시 생략)를 첨부하여 양도·양수물품 보세운송신고(별지 제22호 서식)를 하고, 보세운송 신고수리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반입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양수도하는 경우의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양수인의 반입검사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99.12.28, '05.12.27)
  -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출국하는 공·항만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기 곤란하고 구매자가 출국하는 공·항만의 인근에 같은 법인의 보세판매장이 있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간 해당 물품이 판매된 것으로 보고 출국지 보세판매장의 같은 물품을 인도장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이때에 해당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보세판매장에서는 구매자에게 교환권을 발급한 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교환권의 사본을 모사전송 등의 방법에 의거 출국지 보세판매장으로 송부하고 출국지 보세판매장에서는 같은 사본에 따라 판매물품을 인도장으로 보세운송 한다.('06.6.28 개정) ④ 제3항의 경우 재고관리는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보세판매장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출국지 보세판매장에서는 판매한 것으로 정리하여야하며 제23조제9항제1호에 따라 회수한 교환권을 출국지 보세판매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04.10.27, '06.6.28 개정)
- 제26조(대금영수) 판매대금은 원화 또는 외화로 영수할 수 있으며, 외화로 영수 하였을 때에는 환율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절사하고 거스름돈이 없을 때에는 원화로 지불하여야 한다.('99.12.28 일부개정)
- 제27조(미인도 물품의 처리) ① 인도자는 판매물품이 인도장에 반입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인도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인도자의 입회하에 현품을 세관장이 승인한 행낭에 넣은 후 세관공무원의 시건과 봉인을 받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05.12.27, '08.1.15 개정, '11.11.30 개정)

-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으로 보세운송신고 하고, 보세운송신고수리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해당 보세판매장에 반입하고 미인 도 물품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04.10.27 개정)
- ③ 운영인은 재반입된 미인도 물품에 대하여 지체없이 제23조제12항제2호에 따라 확인된 주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거 구매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물품을 즉시 우편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에 대하여는 반입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재판매할 수 있다. 다만,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해당 물품과 같은 물품을 확보할 수 있어 구매자의 물품 인도 요구에 즉시 응할수 있는 경우에는 반입 즉시 재판매할 수 있다.('04.10.27 개정)
- 제28조(반품, 분실물등의 처리) ①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교환·환불하여 줄 수 있으며,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22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되어야 한다.('01.7.1개정, '04.10.27 개정, '11.11.30개정)
  - ② 운영인이 판매물품을 교환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에 재반입 절차를 취하고 교환하여 주는 물품은 판매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상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병기하여야 하며, 판매물품을 환불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에 재반입 절차를 취하며 반환된 현금은 판매취소로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01.7.1 개정)
  - ③ 보세판매장 물품이 분실 그 밖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 수량을 월간 매출액과 대비하여 상관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때에는 범칙조사 절차없이 해당세액을 추징하고 재고대장에서 공제 처리한다. 다만, 부족물품의 발생사유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후 통고처분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송치)의뢰를 하여야 한다.('04.10.27, '10.2.10 일부개정)

- 제29조(특허상실에 따른 재고물품의 처리) ①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특허가 상실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은 즉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현품을 확정하여야 한 다. ('04.10.27 제목개정)
  - ② 운영인은 특허가 상실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내에 재고물품을 판매, 타 보세판매장에 양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입통관절차에 의거 통관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이고한 물품을 운영인이 이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타 보세판매장에 양도하지 않거나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화처리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98.12.11 개정)
- 제30조(미판매 재고물품의 처리) ① 운영인은 외국물품을 변질, 고장, 재고과다 그 밖의 유행의 변화에 따라 판매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반송 :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제출
  - 2. 폐기 :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폐기신청
  -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폐기하는 물품의 가치가 상당하여 폐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체화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수 있다.
  - ③ 운영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와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의 공급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화물관리번호 생성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한다.('06.6.28 개정)
- 제31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운영인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보세판매장 물품의 반출입에 따른 신고·신청 및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 등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받지 아니하는 내국물품을 반출입하는 때와 전산처리설비의 장애 등으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 등에 대하여 검사·감시·감독 등 필요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세판매장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재고관리시스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04.10.27 전문신설)

#### 제5장 업무감독 및 협의단체

- 제32조(세관장의 업무감독) ① 세관장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된 판매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운영인의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04.10.27 개정)
  - ②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 3개월 이내에 판매물품 재고관리, 업무사항 등의 관리에 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보세판매장 현황(대표자, 임원, 판촉사원, 매장, 보관창고 등)
    - 2. 판매물품 재고관리(반출, 반입, 미인도, 양수도 등)
    - 3. 구매자 구매한도 및 출국자여부 관리
    - 4.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현황 전산관리(구매대장, 판매대장)
    - 5. 판매물품 교환권 관리(구매자 직접서명, 인적사항 대조확인 등)
    - 6. 반출입물품 보세운송관리(인도장,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
    - 7. 반품, 교환, 환불시 물품관리
    - 8. 그 밖의 제37조의 제재규정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의 운영 및 관리('08.1.14 신설)
  -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보세판매장 물품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를 반기 1회 재고조사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세판매장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08.1.15 신설)
  - ④ 세관장은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보세판매장의 판매량, 외국반출현황, 재고량 및 제37조의 행정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이하 "재고조사"라 한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고조사의 횟수 및 그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후 결산기준일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결산기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01.7.1 일부개정)
  - ⑤ 세관장이 제4항의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세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특정 품목 및 업무사항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조사반을 지명하고 7근무일 이내의 조사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08.1.15 개정, '12.10.14 개정)

- ⑥ 세관장은 제2항의 재고조사시에는 법 제26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세판매 장운영과 관련한 계약서, 판매대장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 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01.7.1 신설)
- ⑦ 제4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 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2.10.14 신설)
  - 1.「행정조사기본법」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3조(담당공무원의 임무)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관리감독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세판매장을 순회하면 서 세관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04.10.27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각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04.10.27 단서신설)
    - 1. 보세판매장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검사('04.10.27 개정)
    - 2. 반입검사신청한 물품의 검사('04.10.27 개정)
    - 3. 반입물품을 보관창고에 진열하는 업무의 감독
    - 4. 판매물품 및 미인도물품의 보세운송 행낭의 봉인ㆍ시건 및 이상유무 확인
    - 5. 보관창고와 매장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과 관리대장의 확인('04.10.27개정)
    - 6. 외교관면세점의 외교통상부장관 승인수량과 판매잔량의 확인
    - 7. 보세운송 신고 및 도착보고 물품의 확인·검사('04.10.27 개정)
    - 8. 인도자의 업무감독 및 인도장 인도물품의 입회 · 확인('04.10.27 개정)
    - 9. 인도장이 지정되지 않은 출국장의 구매물품 인도에 관한 업무('05.12.27신설)
    - 10. 보세판매장 물품의 반출입, 판매 및 인도에 관한 대장 등의 기록 확인
    - 11. 운영인과 그 종업원에 대한 세관업무의 지휘 감독
    - 12.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 제34조(보세사의 임무) ①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은 운영인이 하여야 한다.
  - 1. 반입물품의 보관창고 장치 및 보관
  - 2. 보세판매장 물품 반출입 및 미인도 관련 대장의 작성

- 3. 보세운송 물품의 확인 및 이상 보고
- 4. 보관창고와 매장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
- 5. 보세운송 행낭의 시건 및 봉인과 이상유무 확인과 이상보고
- 6.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
- 7. 그 밖에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 ② 운영인 및 보세사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9조 운영인 등의의무 및「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제13조 보세사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04.10.27 전문개정)
- 제35조(세관장의 보고사항) ① 세관장이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특허 및 특허갱신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특허가 취소 또는 상실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이 제32조제3항의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99.12.28 일부개정)
- **제36조(보세판매장 협의단체)** ① 제2조제1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은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05.12.27 개정, '11.11.30 개정)
  - 1. 보세판매장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 · 연구 및 정책제안
  - 2. 보세판매장 반출입 물품의 물류관리
  - 3.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인도사업
  - 4. 보세판매장 종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 5. 그 밖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 ② 협의단체의 장은 운영인의 상거래질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며, 자율규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세관장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수있다.('05.12.27 개정, '11.11.30 개정)
    - 1. 국가위신과 이익을 손상하는 행위
    - 2. 부당한 가격을 받는 행위
    - 3. 과당경쟁 또는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4.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보세판매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 ③ 협의단체의 장은 제5조제10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중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11.1130 전문신설)

# 제6장 보 칙

- 제37조(행정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때에 주의회수는 세관장의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관련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는 때에 1회로 산정하며, 주의건수가 5회인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 (01.7.1 개정, '04.10.27 개정, '15.7. 개정)
  - 1. 제5조제4항 후단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제5항, 제21조제5항, 제23조 제12항을 위반한 때
  - 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장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환권에 구매자 인적사항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
  - 3.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산품을 구분하여 적재 · 운송하지 아니한 때
  - 4. 제22조제4항에 따라 판매물품의 인도장 도착규정을 위반한 때
  - 5. 인도자가 제23조 제9항 각호를 위반한 때
  - 6. 보세사가 제34조에 따른 보세사의 임무를 소홀히 한 때('05.12.27 개정)
  - 7.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 등의 재고와 재고관리시스템의 재고가 불일 치하는 때('05.12.27 신설)
  - 8. 제28조제1항의 절차에서 제22조제3항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때
  - 9. 운영인 또는 인도자가 세관장의 즉시 시정 요구사항을 위반한 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이때에 주의회수는 세관장의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관련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는 때에 1회로 산정한다.(01.7.1 일부개정, '04.10.27 개정 '15.7. 개정)
    - 1. 제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 항·제4항 및 제5항, 제23조제8항·제11항·제13항 및 제14항, 제24조, 제25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2. 제5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보고, 교육의무 등을 하지 아니한 때 ('08.1.14, '08.1.15 개정)
    - 3. 과실로 제15조를 위반한 때
    - 4. 제19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1조제4항에 따른 구매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
    - 5.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판매한 때
    - 6. 제21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7. 제22조제3항에 따른 현장인도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8. 인도자 및 인도보조자가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 9. 제30조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송, 폐기 또는 반출한 때
  - 10. 제36조에 따른 협의단체의 행정처분 건의가 있는 때('05.12.27 개정)

- 11. 제1항 각호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장에 판매물품의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01.7.1 일부개정, '04.10.27 개정)
  - 1. 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 때
  - 2.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을 위 반한 때
  - 3. 고의로 제15조를 위반한 때
  - 4.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한 물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한 때
  - 5. 제22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시건과 봉인없이 보세운송한 때
  - 6. 제28조의 절차에서 제22조제1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때
  - 7.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
  - 8. 1년내에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판매 및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01.7.1 일부개정)
  - 1. 운영인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이 해당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를 위반한 때('98.12.11 개정)
  - 2. 법 제17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세점에서 판매금지품목을 판매한 때('04.10.27 개정)
  - 4. 제21조를 위반하여 운영인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행위를 한 때 ('04.10.27 신설)
  - 5. 제32조와 관련하여 정기 재고조사 시 판매대장 등 필요서류 요구에 불응하 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 6.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04.10.27 개정)
- ⑤ 세관장은 운영인의 법규 위반사항이 법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행정처분외에 법 제277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01.7.1 신설, '04.10.27 개정)
- 제38조(청문) ① 세관장은 제37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8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전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운영인에게 청문절차를 통보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

- 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04.10.27 전문신설)
-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인이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6.6.28 신설)
  - 1.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종합인증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11.11.30 개정)
  - 2.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인 경우('11.11.30 개정)
  - 3. 관세행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 제39조(서류의 보관) 운영인은 물품반입검사신청필증(구비서류 포함), 보세운송 신고필증 및 교환권 등 판매물품 반출입과 판매에 관한 자료를 시행령 제3조에 정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는 2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04.10.27 전문신설, '15.7. 개정)
- 제40조(준용규정) ① 특허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이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 ② 제16조제4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시의 신고서 처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③ 이 고시에 따라 반송하는 물품의 반송절차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04.10.27 전문신설, '15.7. 개정)
  - ④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11.3.16 신설)
-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련 제24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고시 제88-547호, '89. 3. 9>

- 1. (시행일) 이 고시는 198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 (폐지규정)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보세판매장 운영요령(관세청고시 제88-527호,

- '88. 6.27)및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입대상물품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88-544호, '88.11.15)는 폐지한다.
- 3.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에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특허기간을 갱신하는 때에는 이 고시 제4조내지 제5조 제1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세판매장 운영요령(관세청고시 제88-527호, '88.6.27) 제4조를 적용한다.

#### 부칙<고시 제89-566호, '89. 3. 9>

(시행일) 이 고시는 198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고시 제89-597호, '89.10.12>

이 고시는 198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고시 제89-599호, '89.10.25>

이 고시는 1989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고시 제89-607호, '89.12.15>

(시행일) 이 고시는 198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항은 1991년 7월 1일 이후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1991년 6월 30일 이전부터 반입한 반입신고 건별로 이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 부칙<고시 제90-640호, '90. 7.11>

이 고시는 1990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사용하던 별지 제16호 서식(교환권)은 1990년 9월 30일까지 개정서식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 부칙<고시 제90-657호, '90.12.28>

(시행일) 이 고시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고시 제91-688호, '91. 6.21>

**(시행일)** 이 고시는 1991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고시 제92-732호, '92. 5.19>

(시행일) 이 고시는 1992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고시 제92-762호, '92.12.24>

(시행일) 이 고시는 199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고시 제93-785호, '93. 4.1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199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특허기간은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특허(특허기간 갱신을 포함한다)받은 보세판매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고시 제94-852호, '94. 1.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받아 운영중인 보세판매장에 대하여는 이 세칙에 의하여 특허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그 특허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한 특허기간으로 한다.
  - ② 이 세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세판매장 설치.운영특허를 받은 자가이 세칙 시행후 당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동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갱신신청을 할 수 있다.

#### 부칙<고시 제94-878호, '94. 5.23>

(시행일) 이 고시는 199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고시 제95-917호, '95. 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사용하던 별지 제4호 서식은 1995년 5월 1일부터 이 고시에 의한 개정 서식을 사용한다.

# 부칙<고시 제96-34호, '96. 6.24>

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고시 제97-42호, '97.1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7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고시 제97-43호, '97.11.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7년 12월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시행전에 판매한 물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고시 제98-14호, '98. 4.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고시 제98-49호, '98. 9.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고시 제98-78호, '98.12.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고시 제5조 제6항 단서규정은 1999.1.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고시 제99-28호, '99. 7.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8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고시 제99-53호, '99.12.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고시 제2000-43호, '00.12.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특허신청 및 허가)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2001. 3월 개항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보세판매장을 특허신청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대로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후 1월이내에 제7조(담보제공)의 개정규정에 의한 담보금을 갖추어야 한다.

# 부칙<고시 제2001-11호, '01.2.16>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의 특례 개정) 고시 제2000-43호 부칙 제1조 단서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되 특허신청 구비서류중 "국유재산사용허가증 사본"은 "시설주와 임대차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필증(단, 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은 "「전기사업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합격증"으로 한다"로 한다.

#### 부칙<고시 제2001-31호, '01.6.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01.7.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①제5조제1항의 국산품매장면적은 이 고시 시행일이후 신규특허를 신청한 보세판매장에 한한다.
  - ②제5조제11항에 따라 별지 제24호 서식의 서약서는 고시시행일에 보세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인 및 보세판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원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고시 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27조제1항에 따라 교환 및 환불조항은 교환·환불하고자하는 물품가격 총액이 미화 400불초과물품은 고시시행당일 교환 및 환불을 위하여 휴대품 신고 및 유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고시 제2004-44호, '04.10.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전자상거래 방법의 물품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전자 상거래에 의한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운영인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 월 이내에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부칙<고시 제2005-42호, '05.12.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적용예) ①제14조제4항의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출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②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간 양수도물품의 반입신고기한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고시 제2006-25호, '06.6.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고시 제2008-5호, '08.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기준) ① 제6조의3제1항제2호의 기준 적용일은 2006년도 자료에 근거한다.
  - ② 제6조의3 및 제9조의2의 자료의 근거는 관세청 전산시스템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 제3조(시내면세매점 특허기간 갱신에 관한 경과규정) ① 현행 시내면세매점의 특허 만료일이 2010년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내면세매점의 특허기간 갱신은 특허만료일부터 5년(임차인 경우에는 임차기간으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내로 한다.
  - ② 현행 시내면세매점의 특허만료일이 2014년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내면세매점의 특허기간 갱신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임차인 경우에는 임차기간으로 하되 5년 이내)내 특허기간동안(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의 실적이 갱신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③ 현행 시내면세매점의 특허기간 갱신에 대하여는 최근 5년의 특허기간 동안의 실적을 적용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이후의 실적부터 적용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행 시내면세점에 적용되는 특허기간 갱신 요건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한다.
    - 1. 2013년에 특허만료되는 시내면세매점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까지 3년동안의 실적으로 2013년에 특허기간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 2. 2014년에 특허만료되는 시내면세매점의 경우 2010년부터 2014년(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까지 4년동안의 실적으로 2014년에 특허기간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 3. 2015년에 특허만료되는 시내면세매점의 경우 2010년부터 2015년(신청일이 속하는 달은 제외)까지 5년동안의 실적으로 2015년에 특허기간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일반적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고시 제2008- 26호, '08.8.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고시 제2009- 47호, '09.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고시 제2009- 120호, '09.12.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기준) 제6조의3 제3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고시 시행전의 부산 및 기타지역의 외국인 입국자의 지역별 증가수 산정이 필요한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고시 제2010- 29호, '10.2.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고시 제2010- 106호, '10.7.16>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고시 제2011- 14호, '11.3.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고시 제2011- 47호, '11.11.30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고시 제2012-36호, '12.10.14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산품 매장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 내면세점 운영인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매장면적의 30%이상 또는 660㎡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장면적의 40%이상 또는 825㎡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부칙<고시 제2014-35호, '14. 3.12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고시 제2015-06호, '15. 1.27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시 제2015- 호, '15. 7.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외교관 면세점에서 판매할 물품 (제한품목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된 물품 포함)

품목번호(HS)	품 명
0206	식용설육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0402	분유
0405	버터
0406	치즈
0409	천연꿀
0712	건조한 채소(양파 및 마늘 제외)
0801, 0804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파인애플(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함)
0802	너트(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함)
0805	감귤류의 과실(오렌지·맨더린·탄제린·클레멘타인을 건조한 것에 한함)
0806	포도(건조한 것에 한함)
0813	건조한 과실
0902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홍차에 한함)
0904	후추
0905	바닐라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10	타임, 샤프란, 월계수의 잎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1105	감자의 분, 조분과 플레이크
1508, 1509, 1512	낙화생유, 올리브유, 면실유, 해바라기유로서 식용에 한함
1517	마가린, 쇼트닝
1601	소시지
1602	육 또는 설육의 기타 조제식료품(밀폐된 용기에 넣은 것에 한함)
1604	어류(연어, 다랑어, 정어리, 상어, 멸치)의 조제식료품(밀폐된 용기에 넣은 것에 한함)
1605	조개, 새우, 홍합, 굴의 조제식료품(밀폐된 용기에 넣은 것에 한함)
1703	당밀(식용에 한함)
1704	설탕과자(누가, 추잉껌, 캐러멜에 한함)
1805	코코아분말
1806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1901	맥아엑스와 육아식용오트밀
1902	마카로니, 스파게티
1904	콘 플레이크, 콘 칩, 퍼프드 라이스
1905	비스킷, 파이, 케이크, 쿠키, 크래커

품목번호(HS)	품 명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한 채소와 과일
2002, 2003, 2005	조제한 채소
2007	잼, 과실젤리, 마말레이드, 과실, 퓨레, 과실 페이스트
2008	기타의 조제한 과실(밀폐된 용기에 넣은 것에 한함. 단 알콜이 함유된 것은 제외함)
2009	과실주스(가당한 오렌지쥬스는 제외함), 채소주스
2101	커피(인스턴트 커피, 그라인드 커피)
2102	활성효모와 조제한 베이킹파우더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2104	수프 및 브로드
2106	조제식료품(콜라베이스는 제외함)
2106.90-9091	로얄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2201	광수와 탄산수
2202	레몬에이드, 광수와 탄산수
2202.90-2000	과즙음료
2203	맥주
2204	포도주
2205	베르뭇
2206	사과술, 배술, 미드
2208	꼬냑, 위스키류, 브랜디류, 럼 및 태피아, 진 및 제네바, 보드카, 리큐르 트 및 코디얼(기타), 기타 브랜디류(소호 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함)
2209	식초
2402, 2403	담배
2501	소금
2940	당류
3301	정유(식용에 한함)
3303, 3304, 3305, 3306, 3307	향수, 화장품류, 화장용품류
3401	화장비누
3402.90-1000	조제계면활성제
3402.90-2000	조제세제
3402.90-3000	조제청정제
3405	신발·가구·마루·자동차 차체·유리 또는 금속용의 광택제 및 크림·연 마페이스트·연마분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3406	양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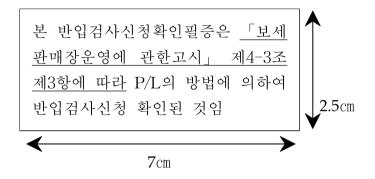
품목번호(HS)	품 명
3701	일반 사진용 필름
3808	살충제, 살균제, 소독제
3924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 품
4014	고무제의 위생용품
4202.1	트렁크, 슈트케이스, 화장품케이스, 이그잭큐티브 케이스, 서류가방, 학생가 방 및 이와 유사한 용기
4202.2	핸드백(멜빵이 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함)
4202.3	통상 포켓 또는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4203.2	장갑류
4203.30	벨트와 띠
4811	왁스지
4818	손수건, 크레싱티슈, 책상보, 서비에트, 유아용냅킨, 배드시트 및 이와 유 사한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6211	수영복
6211.20	스키슈트
6214	쇼올·스카프·머플러·만틸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
6215	넥타이류
6301.20-0000	양모 또는 섬수모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함)와 여행용 러그
6301.30-0000	면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함)와 여행용 러그
6301.40-0000	합성섬유제의 모포(전기모포를 제외함)와 여행용 러그
6301.90-0000	기타 모포와 여행용 러그
6302	베드린넨, 테이블 린넨, 토일렛 린넨 및 주방 린넨
6303	커튼 또는 침대용 밸런스
6601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6912	도자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
7013	유리제품
7321.11-0000	조리용기구와 가열판(가스연료용의 것 또는 가스와 기타 연료겸용의 것)
7321.12-0000	조리용기구와 가열판(액체연료용의 것)
7321.19-0000	조리용기구와 가열판(고체연료의 것)
7418.19-1000	식탁용품, 주방용품
7607	알루미늄의 박(포일)
7615.19-2000	식탁용품, 주방용품

품목번호(HS)	품 명
8210	수동식 기계기구
8211.91-00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8212	면도기와 면도날
8213	가정용 또는 사무용 가위, 매니큐어용 가위
8214	매니큐어, 패티큐어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함)
8215	스푼·포크·국자·스키머·케이크서버·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주 방 또는 식탁용품
8418.69	아이스크림 제조기, 아이스큐버
8422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기계
8435	포도주·사과술·과즙 또는 이와 유사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 스·크러셔 및 이와 유사한 기계
8479.82	혼합기,파쇄기와 분쇄기, 반죽기, 교반기
8479.89-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기능이 있는 것에 한함)
8508	진공청소기
8509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바닥광택기
8509.80-9000	기타의 기기(전동칫솔)
8510	면도기
8516	헤어드라이어, 헤어컬러, 전기 다리미, 토스터, 커피 끓이는 기기, 마이크 로웨이브 오븐, 전기오븐, 건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함)
8517.11-0000	유선전화기(코드리스 핸드세트가 있는 것에 한함)
8523	레이저디스크, 콤팩트디스크
9004	선글라스
9503	완구
9506.91-0000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 체조 또는 육상경기용품
9603	칫솔, 면도용 브러시 및 화장용 브러시
9608	만년필, 볼펜
9609	연필·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의 목탄·필기용 또는 도화용의 쵸 크
9613	끽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
9614	끽연용 파이프와 시가 홀더, 시가렛 홀더 및 이들의 부분품
9615	빗·헤어슬라이더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컬링그립·헤 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7.00-1000	보온병
9617.00-2000	보온도시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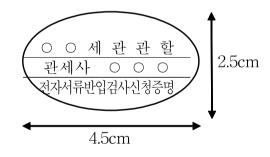
## (별표 2) 반입검사신청확인 필증(담당자 확인)



#### (별표 3) 반입검사P/L신청 확인필증



## (별표 4) 전자서류 반입검사신청증명



(별표 5) 외교관면세물품 통관확인 필증



	H 세미메자 서울	시·운영 특허 신청서	처리기간								
	모세선배경 결/	기 한	8일								
신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	<u>र</u> ू								
청	③ 주 소										
인	④ 대 표 자 성 명	⑤주민등록번	<u></u>								
	⑥ 보세판매장구분	(1. 출국장면세점 2. 시내면세점 3. 외	교관면세점)								
	⑦ 명 칭										
신	⑧ 소 재 지										
청	<ul><li>⑨ 면 적 (⑩+⑪+공용면적)</li><li>⑩ 건물의 구조, 동수와 면적 (판 매 장)</li></ul>										
내	① 부대시설의 구조, 동수와 면적 (보 관 창 고)										
용	⑩ 설치・운영 기간										
	① 판 매 물 품										
	① 설치·운영 목적										
미	· · · - · · · · · · · · · · · · · · · ·	법 시행령 제19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저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 특허를 신청합 20 년 &	남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C	○ 세 관 장 귀 <sup>☆</sup>	5 <del>]</del>	·								
1. 2. 3. 4. 5.	점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수수료 3.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4.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필증(단, 3년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 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점 검결과보고서(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축건물만 해당) 6. 매장 및 보관창고의 위치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ㅏ여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 서 정하고 있는 세관장 확인사항을 조회하는									
نان	- n c n o c o n t t t == 1]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_	'			•	,														
특	허병	번호	:																
							보	세	판	매	장	특	허	장					
^	1	법		Q.	<u> </u>		명												
운영	2	사	겁ス	나 등	- 록	번	호												
인	3	주					소												
	4	보	네 판	바매	장	구	분	(1.	출국	장면	세점	2.	시내면	년세점	3.	외교된	간면	세점)	
	5	보 /	네 핀	<u></u> 매	장	명	칭												
	6	대		갶	<u>.</u>		자					7	생 년	월 일	릴				
		소		자	•		지												
특	9	건물			동수: ] 정		면적												
허	10	부대. (			작동수 창 :		면적												
내	11)	설치	] • -	운영	목	적													
,	12	판	마	7	물	j	품												
용	13	설치	] • -	운영	기て	<u>}</u>													
	14	특	ਨੇ	}	조	,	건												
Ó														행규칙		'조 및	į	보세핀	반매장
ิ	<u>- 20</u>	게 반	반 _	ᅶᄉᆡ		113	<u> (</u> 소에	<a href="https://www.pic.com">HT</a>	刊Ұ	슅의	보세	せҸぴ		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ㅇ ㅇ 세 관 장

	म्योजीनोयः सन् ०	여 트레키기 게시 시키기	처리기간
	모세한매장 결시 • 군	영 특허기간 갱신 신청서	8일
신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	<u> </u>
청	③ 주 소		
인	④ 대 표 자 성 명	⑤주 민 등 록 번 :	호
	⑥ 보세판매장구분		
	⑦ 명 칭		
	⑧ 소 재 지		
신	⑨ 면 적 (⑩+⑪+공용면적)		
청	① 건물의 구조, 동수와 면적 (판 매 장)		
내	① 부대시설의 구조, 동수와 면적 (보 관 창 고)		
용	① 기 설치·운영 특허기간		
0	① 갱신 설치·운영 특허기간		
	④ 판매물품		
	⑤ 갱 신 사 유		
^		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 설치	·운영 특허기간
울	갱신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등	월 일
		신청인 (서명	! 또는 인)
(	) 이 세 관 장 귀	  하	
첨부	서류		수수료
		른 중소·중견기업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一 一 一
		서(매장, 보관창고 및 주차장) 사본 정기검사필증(단, 3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왕 왕
٥.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	U D)
4.		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	
	결과보고서(최근 1년 이내 발행 따른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신	된 것에 한함) 또는「소방시설공사업법」제] 추거문에 하하)	[4조에
5.	매장 및 보관창고의 위치도	ㄱ ㄷㅌ ㄲ ㄷㅁ <i>)</i>	
		여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 정하고 있는 세관장 확인사항을 조회하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5일 (a) 법 인 명 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a) 집 주 소 오 (b) 전 대 표 자 ⑤ 주민등록번호 (a) 보세구역 명칭 ⑦ 종 류 (a) 함 오 재 지 (b) 우 영 인 (c) 전물의구조, 동수와 면적 (매장) (c) 반대/설의 구조, 동수와 면적 (보관창고)		ㅂ세화ㅠ				처리기간								
응		立/11년-				5일								
인 ② 대 표 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 보세구역 명칭 ⑦ 종 류 의 ⑧ 소 재 지	승	① 법 인 명 칭												
(3) 대 표 자 (5) 주민등록번호 (7) 중 류 (8) 보세구역 명칭 (7) 중 류 (8) 소 재 지 (9) 운 영 인 (10) 건물의구조, 동수와 먼적 (매장) (11) 부자사성의 구조, 동수와 먼적 (보관창고) (12) 관매물품의 종류 (13) 특 히 기간 (5) 계 사 유 (14) 사 유 (14) 사 유 (15)	계	③ 주 소												
③	인	④ 대 표 자	(3	· 주민등록번호										
(3) 운 영 인 (1) 건물의구조, 동수와 면적 (매장) (1) 부대사설의 구조, 동수와 면적 (보관장고) (2) 판매물품의 종류 (3) 특 허 기 간 (3) 특 허 기 간 (4) 장시법」 제17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및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보세구역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연)		⑥ 보세구역 명칭	C	⑦ 종 류										
(1) 건물의구조, 동수와 변적 (배장) (1) 부대시설의 구조, 동수와 면적 (보관창고) (2) 판매물품의 종류 (3) 특 허 기 간 (3) 특 허 기 간 (5) 계 사 유  「관세법」제17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및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따라 위와 같이 특허보세구역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명 또는 인)	피	8 소 재 지		,										
변격 (매장) ① 부대사설의 구축 동수와 면격 (보관장고) ② 판매물품의 종류 ② 특 허 기 간  승 계 사 유  『관세법』제17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및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따라 위와 같이 특허보세구역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승	9 운 영 인												
인 ① 판매물품의 종류 ③ 특 허 기 간	계	면적 (매장) ① 부대시설의 구조, 동수와												
승 계 사 유  「관세법」제17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및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보세구역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O 에 관 장 귀하  침부서류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보세판매장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또는 국유재산 사용・수익하가서 사본 3. 승계시 해당 보세판매장 운영과 관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의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세관장 확인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인	,												
지 전 전 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세관장 확인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관세법] 제17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 및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에 따라 도착하여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 이 세 관 장 귀하 장 귀하 장 기하 전 장 기하 전 장 기하 전 전 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세관장 확인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특 허 기간												
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보세구역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O 에 관 장 귀하  천부서류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보세판매장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또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3. 승계시 해당 보세판매장 운영과 관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의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세관장 확인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승 계 사 유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에			, , -	- '	1시」 제3-6조								
지 전 시 관 장 귀하 점부서류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보세판매장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또는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사본 3. 승계시 해당 보세판매장 운영과 관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의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세관장 확인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청부서류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보세판매장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또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3. 승계시 해당 보세판매장 운영과 관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의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세관장 확인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	는 인)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보세판매장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또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사본 3. 승계시 해당 보세판매장 운영과 관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의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세관장 확인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0 0	세 관	장 귀하								
3. 승계시 해당 보세판매장 운영과 관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의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세관장 확인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획		사용・수이참가사	시보	수수료								
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세관장 확인사항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3. 승계시 해당 보세판매장 운영과 관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없 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5호 서식)

신고변	· 보호:	11	n] ⇔] _i]	ו או בו	)	1		처	리기간		
		卫 ∕	세 반 매	상물	신고서	1			1일		
①보세	판매장명			②보세구			③반	입년월일			
4	)	※ ⑤화물관리번호 <sup>분</sup> MRN MSN H		_	6		7	포 장 명	세	9	
④ 일련 번호	구분			HSN	B/L번:	호	품 명	단위	개수	중량(kg	) 비고
		T MKN MSN F									
		세 :	운 송 /	사 항			「관세법 제176조,				] 시행령 관한 고
⑧ 출	·발지 및	목적지	<b> </b> :			시」제4- 반입신고			보세판대	매장물품	
	·송기간:							20			
	· 송 인:						ر اج ا <u>د</u>			(6)	
① 세	관직원	확인란:						신청'	긴		(인)
								세 관	· 장	귀하	

- ※ 1. 화물관리번호는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구분란에 I로 기록하며, 적하 목록관리번호(MRN), MASTER B/L 일련번호 및 HOUSE B/L 일련번호를 기록한다
  - 2. 국내 타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구분란에 L를 기록하고, 비고란에 타보세구역반출승인번호를 기록한다.

## (별지 제6호 서식)

# 구매자관리대장

## ○ ○ 보세판매장

	l)판대 일자		구기	매자역	<u></u> 민적시	항		판매	물품			영수	금액		판매	) 방법	(f)	물품	인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판매물품명세	17)	18)
			국	여	성	선	품	규	단	수	미	일	원	합	교 환	우편	르품면	인	인
년	월	일	적	권	명	(7)	명	격	가	량	화	화	화	계	권 번	우편탁송의뢰번호	세	도	도
				번  -		편			(\$)		(\$)	(¥)	(₩)	(\$)	호	뢰	서번호	일 시	장 소
				ই		명										빈 호	<u>x</u>		

※ ⑭,⑰및⑱번란은 시내면세점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 업 무 사 항 보 고 서

1.구매자별 인원현황 및 판매현황

년	월분

				③내·	국인					①외	국인			②총계					
1	② 보세	4	**************************************	마	86	00불	이상	13	총구	매	⑪600불이상			22총구매			26600불이상		
세관	포세 판매장	⑤ 인 원	⑥ 원 화	⑦ 미 화	9 인 원	① 원 화	① 미 화	① 인 원	①5 원 화	(16) 미 화	® 인 원	⑨ 원 화	20 미 화	③ 인 원	24 원 화	25 미 화	② 인 원	28 원 화	② 미 화
		- 1			Ľ			<u> </u>			Ľ			<u> </u>			Ľ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2. 물품별 판매실적

년 월분

			(3	)외=	국산·	품			100 H	n) a	っ). に	ㅁㅍ	① 내국물품			Σ.	<u>⑥</u> 총계			
1	2	④수	④수입물품			⑦환급물품			⑩보세공장등물품				(13)	/네 <sup>-</sup>	· 五	古	W 0 / II			
세관	보세판매장	⑤당钅	월 ⑥-	구계	85	강월	<u></u> ভূ	구계	11) 7	강월	12 -	F계	147	강월	(I5)	F계	<u>17</u> 7	강월	₩≒	-계
			미 원 화 화		원 화		원 화	미 화	원 화	미 화	원 화	미 화	원 화	미 화		미 화	원 화	미 화	원 화	미 화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1호 서식)

# 업 무 사 항 보 고 서

□ 구매자 및 물품별 판매현황

 년	월분

		③내국인 ②외국인															
	2													(	21)총계		
① 세관	보세	4	④외국산품			⑧내국물품			외국산	품	17	내국물	품				
ୁ ମାଧ୍ୟ 	판매장	5	6	7	9	10	(1)	<u>(4)</u>	<u>(15)</u>	16	18	<u>(19</u>	20	22	23	24	
		인원	원화	미화	인원	원화	미화	인원	원화	미화	인원	원화	미화	인원	원화	미화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외국산품 : 수입물품 + 환급물품

(별지 제7-2호 서식)

# 업 무 사 항 보 고 서

□ 보세판매장별 면적현황

 년		월분
(단위	:	m²)

		T	( - 11	. 111 /			
	೧೯೬೪)		3	매장면적			
①보세판매장명	②특허 면적 (③+⑨+⑩)	④전체매장	⑤외국산품 매장		산품매장	⑨창고 면적	⑩공용 면적
		(5+6)	매장	⑦대기업 제품 매장	⑧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제품은 제품의 브랜드 소유 기업에 따라 구분함

(별지 제7-3호 서식)

# 업 무 사 항 보 고 서

□ 국적별 판매현황

년 월분

① 니 게 되 레 기 H	075	@ 7 <b>7</b> 1		외국	산품	내국	물품
①보세판매장명	②코드	③국적	④인원	⑤미화	⑥원화	⑦미화	⑧원화
	1	한국					
	2	중국					
	3	일본					
	4	미국					
	5	대만					
	6	기타					
	합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4호 서식)

## 업 무 사 항 보 고 서

□ 물품별 품목별 판매현황

 년	월분

1	②전처			⑥외국산품			⑩국산품						
보세판	(외국	산품+국	'산품)	<u> </u>	7776	†	(	[]대기입	]	⑤중소·중견기업제품			
매장명	③품목	<b>④미화</b>	⑤원화	⑦품목	<b>⑧미화</b>	⑨원화	①품목	①미화	<b>④원화</b>	16품목	[7]미화	(8원화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③,⑦,⑫,⑯품목 코드 : 1.화장품 2.향수 3.가방류 4.시계 5.주류 6.담배 7.귀금속류 8.의류 9.인홍삼 류 10. 안경(선글라스)류, 11.전자제품 12.식품류 13.민예품, 14.신발류 15. 기타

(별지 제7-5호 서식)

## 업 무 사 항 보 고 서

□ 구매자별 품목별 판매현황

년	월분

1		②내국인			⑥외국인	
보세판매장명	③품목	<b>④미화</b>	⑤원화	⑦품목	⑧미화	9원화
_						
_						
-						
_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③,⑦품목 코드 : 1.화장품 2.향수 3.가방류 4.시계 5.주류 6.담배 7.귀금속류 8.의류 9.인홍삼 류 10. 안경(선글라스)류, 11.전자제품 12.식품류 13.민예품, 14.신발류 15. 기타

## (별지 제7-6호 서식)

# 보세판매장 근무직원 현황 및 변경사항

## 1. 전월 현황

(단위 : 명)

보세판매장명		총 계			판촉인원		물류인원		사무인원		타	보세사
	계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작성요령 : 소속직원은 보세판매장 법인에 소속된 직원, 비소속지원은 타 법인에 소속된 직원

## 2. 입사(전입) 현황

(단위 : 명)

보세판매장명	총 계			판촉	인원	물류	인원	사무	인원	기타		보세사
	계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 3. 퇴사(전출) 현황

(단위 : 명)

보세판매장명		총 계		판촉	·인원	물류	인원	사무	·인원	7]	타	보세사
	계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 4. 현재 현황

(단위 : 명)

보세판매장명		총 계		판촉인원		물류인원		사무인원		기타		보세사
	계	소속 직원	비소속 직원	소속 직원								

## (별지 제8호 서식)

판 매 대 장

품명 : 규격 :

	반 '	입 량		판	메	랑	=	잔	량	
① 년월일	② 수량	③ 금액(\$)	④ 수량	5	크 (6)	액 ⑦	8	9 ⑩ 수량 금액(\$)		⑪ 비고
	1 0	Δ 1(Ψ)	1 0	금액(\$)	일화(¥)	원화(₩)	합계(\$)	1 0	Δ 1(Ψ)	

<sup>※</sup> 판매사항을 컴퓨터에 입력사용 할 시에는 Brand별로 입력할 수 있지만 세관요구시 물품별로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방법에 :	 의하 보세파매	장 묵포	 파매시고서		처리기	간
	E/10/1/10 B 11		0 6 6			1일	
신	① 보세판매장 명칭			② 사 업 자 등록번호			
고	③ 주 소						
인	④ 대 표 자						
	⑤ 통신판매업신고일			⑥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⑧ 통신판매업신고인			⑦ 판매개시 예 정 일			
신	⑨ 인터넷도메인						
고	① 호스트서버의 주소						
사	※ 프로그램 개발 및 -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ਨੋ	① 프로그램 개발자			①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유지보수 사업자			④ 사 업 자 등록번호			
	⑤ 유지보수의 범위			16 계약기간			
조 여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제2항에 따라 전자상거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 나 신고합니다.	래방법에 의하 물품을 판매하	제2항에 와 같이	판매장운영에 관 따라 전자상거리 보세판매장 물들 을 확인합니다.	방법어	- ] 의하	
	년	월 일			1.4	ÓΪ	٥١
	신고인	(인)			년	월	일
	0 0	세관장 귀하			0	○ 세곡	관장
	부서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	 법률」 제12	조에 따른 통신판마	l업신고	수수	- 豆
2	증 사본 .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사	본				없	이미
3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도	L수 계약서(위탁ㅎ	<b>-</b> 는 경우에	한함)			

## 면세통관신청서(외교관면세점) APPLICATION FOR CUSTOMS EXEMPTION

○○세관장귀하 (To: Collector of Seoul Customs House)

아래물품의 면세통관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submit this application for the approval of customs exemption on the goods described below.

공 관 명	용 도	USE	구매자 성명 및 직위
Name of Mission	Official	Private	Name and Title of Puchaser

위 사람 또는 기관은 대한민국 「관세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에 규정된 외교관 관세 면세권의 향유자입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or mission is entitled to exemption of customs duty as stipulated in subparagraph 1 through 4 of paragraph 1 article 88, 「Customs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공관관인 및 책임자 서명 : Seal of mission and signature of the Authorized Officer.

본인은 별첨 물품을 정히 구매하였음을 신고합니다.

I declare that I bought the attached items.

구매자서명:

Purchaser's Signature

# Goods Purchased (A List of Particulars)

Section of Use :

Name of Purchaser :	Invoice	No	
ivallie of fulchaser.	IIIVOICE	INO.	٠

Name of Furchaser.						
NO.	Code	Description of Goods	Unit Price	Q'ty	Amount	
			Total :			
		Grand	l Total :			

년 월 일:

취 급 자:

○○ 세 관 장

청인

# 면세통관의뢰서(외교관면세점) REQUEST FOR CUSTOMS EXEMPTION

외교부장관 귀하 (To: Minister of Foreign Affairs)

아래물품의 구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t is requested that necessary arrangements be made for the purchase of the goods described below.

1		Q	
공 관 명	용 도	USE	구매자 성명 및 직위
Name of Mission	Official	Private	Name and Title of Purchaser
물 품 Desc	ription of Go	oods	수 량 Quantity
신 청 일 자 : Date of Request		Seal of M	명 및 공관관인 : ission and of the Authorized Officer.
위 승인함. Approved.			
승 인 일 자 : Approval Date		서명 및	관인 :
승 인 번 호 : Approval No.		Seal and S	Signature of MOFA
		210	(0) H) Q z) CO/2(z) 하 Q 巫 \]

## (별지 제12호의1 서식)

## Details Of Purchase at Bonded Store

(Korea Veterans Welfare and Healthcare Corporation)

N. T.	•	3	•
Name	Ωŧ	N/I 1	CCIAN
ranic	$\mathbf{o}$	TATI	PITOTE

Period:	Quarter, 200(	)
---------	---------------	---

NO	Title	Name	Description of Goods Quantity					
	Title	rvanie	Liquor(Btl)	Wine(Btl)	Beer(Box)	Cigarette(Ctn)		
	To	otal						

Seal Of Mission And Signature of the Authorized Officer:

Signature and seal of MOFA:

## (별지 제14호 서식)

# 면세통관의뢰서 관리대장

1	2	3	4	품	명	7	8	승인	사항	11)
면허	신고	공관명	구매	(5)	6	수량	가격(\$)	9	10	비고
년월일	번호		자명	Code No	상품명			일자	번호	

(별지 제16호 서식 앞면)

발급번호			발급일자							
	교	환	권							
구매자 성명	(서명)	생년	월일							
국적 및 여권번	<u> ত</u>	출국예정일시								
전화번호		<u>선(기</u>	)편명							
코드번호	품명 및 규격	단가(\$)	수량	금액(\$)						
○ ○ 보 세 판 매 장 인										
	(전화번호 ○○○ - ○○○○)									

190mm×14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면기재사항)

(별지 제16호 서식 뒷면)

## 현 품 인 수 도 사 항

인 수 도 일 시	구매자 인수서명	인도취급자	세 관 확 인

- 1. 본권은 출국시 ○○공항 출국장 보세구역내에 있는 보세판매장의 인도장에서 현품과 교환한다.
- 2. 출국수속시 본권을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 주십시오.
- 3. 본권은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분실 또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4. 구매물품은 양도가 되지 않으므로 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됩니다.
- ※ 만약 본권에 대하여는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폐사 매장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 기재사항은 보세판매장 실정에 맞게 문구를 정정 가감 사용할 수 있다.

## (별지 제17호 갑지 서식)

## 출국내국인 구매 국산품 국외반출 확인서(갑)

Ē	타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7	-ı l	④ 주	소	⑤ 관광사업등록번호	⑥ 반 출 지

#### 물 품 명 세

⑦No. ⑧판매일자		구 매	자	①편명 ②	12교환권번호	①품	명	4) 단가	瓜人라	16판매금액	かみとうりつ
TINO.	안란배들자	⑨여권번호	⑩성 명	UH 건 경	[ W파완턴턴모	心玉	<b>'</b> 0'		1 10 T 8		[[[[] 한물 날사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2호에 따라 상기 물품이 출국하는 내국인에 의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시 관 장

※ 반출지 : 내국인이 출국하는 공항 또는 항구명 반출일자 : 내국인이 인도받아 반출한 날

※ 을지사용 ( )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7호 을지 서식)

## 출국내국인 구매 국산품 국외반출 확인서(을)

판마	자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⑤관광사업등록번호				
							물	품	명	세						
7 No.	⑧판매일자	9여권	구 매 ] 버 ㅎ	자 ⑩성	명	①편명	②교환권번호	5		①품	명		<b>④</b> 단가	① 수량	16판매금액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91	<u> 1건</u> 오	10.9	0											

# 국제우편(항공·해상화물) 송부의뢰서 REQUEST FOR INTERNATIONAL PARCEL POST(AIR·SEA CARGO) DELIVERY SERVICE

발급번:	ਨੋ	
근 법 긴	Υ_	•
Icenance	NL	`

귀 보세 I hereby	판매장여 request	에서 구입 Internatio	l한 아리 mal Parc	∦물품을 국기 el Post(Air·Se	세우편(항表 a Cargo) D	子·해싱 elivery	·화물) 송년 Service of	부방식 the foll	에 의거 인도 lowing mercha	.하여 ndise
주시기 바둑 purchased at		itv-free sho	op.							
r	,	,	· <b>r</b> ·					년 Year	월 Month	일 Day
의뢰인(출국 Requester	인)						판 매 ス Seller	ŀ		
①국 적 Nationality				④여권번호 Passport N			⑦상 Name o	ই of the S	Shop	
②주 소 Address				⑤입국년월 Date of En	try		용주 Address	소 5		
③성 명 Name		명 ignature	)	⑥출국예정 Date of De						
		국 제	우 편 ( I	항공·해상화 Description	·물) 송 부 of Merch	· 의 토 andis	의 물 품 나	개 역		
Number I	구매일자 Date of urchase	①품 Item Des	명 cription	③규격 Size/Style	⑭단가(\$) Unit Price	⑤수 Quant		ınt	⑦송부예정일 Expected Shipping Date	⑧비고 Remark
※ 아래는 편 The followi				기재하는 i d Customs O						
	신고변	<u></u> 호					승인일자			
보세운송신고	신고일	실자			보세운송	승인	담 당 자			
	신 고	인					직급	,	성명	<b>(1)</b>
	확인일	171					송부일자			
보세운송	확인				국제우편	[송부	국제우편(형	}공·해/	상화물) 접수번	<u>ই</u>
도착확인	직급		성명	<b>(1)</b>	(항공·해선	}화물)	송부(선·기	적)확업	인 세관공무원	
		•					직급	,	성명	<b>(1)</b>

(별지 제19호 서식) (갑지)

	반 송	처리기간							
				,, =				19	길
						고번호			
①신.	고인(소재지,	업체명	, 대표자	성명)	3선	고일자			
						-인일자			
			보	- 세 운 -	송 물 품	내 역			
⑤ 일련 번호	⑥ 교환권 번 호	⑦ 구매자 성 명	8 품 명	⑨ 규 격	⑩ 단가(\$)	① 수 량	① 금액(\$)	①③ 인도일시	(14) 비고
① 운송	-목적지			<b>⑥</b> 발송획	인	일자	직급	성명	인
@ A &	귀스귀			(18출발지보	세운송업체				
(II) 관중	·경유지			(19)경유지보	세운송업체				
 	 :기간			② 도착획	l인	일자	직급	성명	인
 ②인도	 _확인	일자:		직급	:	성명 :			인
	:기재란  차량번호등)								
<b></b> 2실첨부	-서류						<b>%</b> 접 수	인 26층 (	인 인

(별지 제19호 서식) (을지)

①신고번호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고서

②신고일자

(을 지)

③신고서

업종

매

	(을	지)			(3)신3	<b>스</b> 석	업송	•	매
④ 일련번호	5 교환권 번 호	⑥ 구매자 성 명	⑦ 품 명	8 규 격	⑨ 단가(\$)	① 수 량	① 금액(\$)	① 인도일시	⑤ 비고
④세관기 <i>ス</i>	H란							(15) 접수인	⑥ 승인인

(별지 제20호 서식)

	보세판대	매장의 수용	·능력 증	감등	처리기간
	3	공사신청(승	인)서		2일
꼬	세 구 역 명				
		수입품매장 -	국산吾 대기업	풍매장 중소중견	보관창고
신	변경전 특허면적(m²)				
청		수입품매장 -	국산득 대기업	푹매장 중소중견	보관창고
내	변경후 특허면적(m²)				
ਲਾ	신 청 사 유				
조제 시 <sub>』</sub>	에법」제174조, 같은 1항 및 「보세판매정 제2-3조에 따라 보셔 등감등 공사를 하고지	}운영에 관한 고 네판매장의 수용능	조제1항 및 시 시 제2-33	! 「보세판매장·	법 시행령 제191 운영에 관한 고 판매장의 수용능 니다.
		월 일 (서명 또는 인)	2	20 년 월	일
Ó	ㅇ 세 관 장 :	귀하	0	○ 세 관 정	<b>}-</b> 직인
첨부	서류 :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 서식)

	판미	물품반출	순승인	](신:	청)	서		처리기간		
신청번호 :									3 일	
① (업체명 신 청 자	, 대표자명,	소재지)		② 공 급 자	(업처	명, 대표지	·명, 소재지	1)		
③ 물 품	의 종 류	1. 외국물품 4. 비환급대			장 등	등 공급물품	등 3. 환급	·대상	내국물품	-
④ 반 출	목 적									
⑤ 반출지 또	) 반출지 또는 보세구역									
⑥ 반 출	) 반 출 사 유									
	반 출 물 품 내 역									
⑦ HSK	⑧ 품 명	9 규 격	⑩ 단	<u> </u> 가(\$)	11)	수 량	① 금액	(\$)	(13) н]	고
4-11조제2형	· , 제4-17조	난한 고시」 져 제1항 및 제3 남출하고자 신	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승인합	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	<u></u>				세 관 7	장			
처브서르 .	<b>장</b> 르	귀: 수수.					승인인			
첨부서류 : 반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u> </u>	<u> </u>		<u> </u>	

(별지 제22호 서식)

보세판매장간 양도・양수물품 보세운송신고서						처리기간	
신고번호 :						3 9	일
①신고자(소재지 업체명, 대표자명) ⑥.			⑥보세운송신고자(소재지 업체명, 대표자명)				
②양수자(소재지 업체명, 대표자명)	보						
	세	⑦보세	운송번	<u>ই</u>			
③보세판매장반입일자	- - - 운	⑧통로 및 목적지					
④반입검사 신고번호		97]	간				
⑤양수도 사유	_   	① 世	송 확 약	ו וי	일자 확인		<u>(1)</u>
		①도 ·	착 확 약	)]	<u> </u>		<u>(1)</u>
반 출	물	품 1	내 역				
②물품구분 ③품 명 ④규 격 ⑤단	<u>├</u> フ}(\$	S) (64	· 량	[[]금액(	(\$)	用	고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간 양도·양수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신고	- 1. 수리합	<b></b> 라니디	ł.	
년 <sup>달</sup> 신청인	릴	일 ①					
세 관 장		귀하			년	월	일
첨부서류	2	个个豆	접수인 승인인		2]		
<ol> <li>양수도계약서(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경우와 동일법인내 보세판매장간 양수 도시 생략)</li> </ol>	l ř	없 음	<u>н</u>	<u>,                                    </u>		<u>0 U.</u>	<u> </u>

(별지 제23호 서식)

	처리기간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인도자 지정 신청(허가)서				7일
신 청 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	
	③ 주 소			
	④ 법인등록 번호			
	⑤ 명 칭			
신	⑥ 소재지			
청	⑦건물의 구조・			
내	동수 및 면적	면적		
역	⑧ 시설주			
	⑨ 지정기간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10조제2항에 따라 면세물품 인도 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1. 인도장 운영계획서 1 부.

- 2. 채용 보세사 자격증 사본 각 1 부.
- 3. 그 밖에 인도자 지정 및 인도장 관리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24호 서식)

	H 세 ID 메 자 브 i	처리기간		
보세판매장 물류창고 운영 허가(신청)서			8일	
신	① 법 인 명 칭		② 사 업 자 등록번호	
청	③ 주 소			
인	④ 대 표 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 보세구역 명칭		<ul><li>⑦ 보세구역</li><li>부 호</li></ul>	
신	⑧ 소 재 지			
청	⑨ 운 영 인			
6	⑩ 건물의구조, 동수와 면적 (매장)			
내	① 부대시설의 구조, 동수와 면적 (보관창고)			
용	② 장치물품의 종류			
	③ 특 허 기 간			
	⑭ 허 가 조 건			
「관세법」 제196조제2항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보세판매장 통합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자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신고인	(인)		
	관 세 청	장 귀하	관	세 청 장
첨부서류 1. 보세판매장 물류창고 사업계획서 2. 반출입 물품 관리 전산시스템 설명서				수수료
				없 음